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
------	-----

제출년월일 : 2005. 12. 1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복식부기 확산보급,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 신활력사업 등 균형발전업무수행,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업무 전담인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정원승인 받음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5명에서 11명이 증원된 596명으로 조정(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585명(증 11명)
- 의회사무과의 정원 : 11명(변동없음)

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및 존속기한 명시(부칙 안 제2조)

-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위한 한시정원
 - 3명(6급1, 7급1, 8급1), 2006.12.31까지
- 균형발전(신활력사업 등)을 위한 한시정원
 - 2명(6급1, 7급1), 2007.06.30까지
-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한시정원
 - 2명(7급1, 8급1), 2007.12.31까지
- 2014평창동계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한시정원
 - 4명(6급1, 7급2, 8급1), 2007.7.31까지
(2006.06.23 IOC의 1차 후보도시 결정제외시 존속기한 만료 조건부 승인)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서승인 : 승인받음
- 라. 입법예고 : 2005.11.23~2005.12.13(20일간)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바. 기타참고사항 : 비용소요 추계서 별첨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585명”을 “59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74명”을 “585명”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정원관리 기 관	직 급					비 고
	계	6급	7급	8급	9급	
집행기관	11	3	5	3	-	

②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6급 1인, 7급 1인, 8급 1인(복식부기 3인)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7급 1인, 8급 1인(사업별예산제도 2인)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6급 1인, 7급 1인(균형발전 2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6급 1인, 7급 2인, 8급 1인(2014평창동계올림픽 4인)은 2007년 7월 31일까지로 하되, IOC의 1차 후보도시 결정에서 제외시에는 2006년 6월 23일까지로 한다.

[별표 1]

평창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직종 · 직급별	합 계	집행기관	의회사무과
총 계	596	585	11
경무직	소계	1	0
	군수	1	
일반직	소계	454	6
	4급	4	
	5급	24	2
	6급	122	1
	7급	143	2
	8급	114	1
	9급	57	
연구직	소계	1	0
	연구관		
	연구사	1	
지도직	소계	23	0
	지도관	1	
	지도사	22	
행정직	소계	17	0
	6급상당	16	
	7급상당	1	
기능직	소계	90	5
	기능6급	3	
	기능7급	8	1
	기능8급	15	1
	기능9급	30	1
	기능10급	34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585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74명</u></p> <p>2.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586명</u> -----, ----- 1. ----- : <u>585명</u> 2.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한시정원) ① ~ ⑤ (생략)

⑥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 3. (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기구 및 정원조례의 제안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당해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나타내어야 한다.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부칙 제2조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별표 1]

2. 정원의 변동 내역

- 사업별예산제도 시범운영 한시정원 ⇒ 중2명(7급 1명, 8급 1명)
- 복식부기 시범운영 한시정원 ⇒ 중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 균형발전 한시정원 ⇒ 중2명(6급 1명, 7급 1명)
-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 한시정원 ⇒ 중4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567,710	
○ 인건비(460)	386,532	
- 기본급	242,922	○ 본봉 6급 1,882,600원×3명×12월=67,773,600원 7급 1,472,800원×5명×12월=88,368,000원 8급 1,061,000원×3명×12월=38,196,000원 ○ 정근수당 97,168,800원×2/12=16,194,800원 ○ 기말수당 194,337,600원×2/12=32,389,600원
- 수 당	31,581	○ 초과근무수당 6,475원×11명×30시간×12월=25,641,000원 ○ 정액수당 . 가족수당 - 30,000원×11명×1.50×12월=5,940,000원
- 정액급식비	17,160	130,000원×11명×12월=17,160,000원
- 교통보조비	16,594	125,710원×11명×12월=16,593,720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 명절휴가비	24,292	$194,337,600\text{원} \times 1/12 \times 150\% = 24,292,200\text{원}$
- 가계지원비	40,487	$194,337,600\text{원} \times 1/12 \times 250\% = 40,487,000\text{원}$
- 연가보상비	13,496	$194,337,600\text{원} \times 1/12 \times 1/24 \times 20\text{일} = 13,495,700\text{원}$
이들전비(200)	18,178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60	$60,000\text{원} \times 11\text{명} = 660,000\text{원}$
- 직급보조비	17,518	$132,710\text{원} \times 11\text{명} \times 12\text{월} = 17,517,720\text{원}$